

##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. 6. 14.

예천군의회의장



### 1. 제정이유

-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,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기능(안 제3조)

-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·제공·열람·대출
-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
-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-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

#### 나. 군수의 책무(안 제4조)

-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,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

하여야 함

**다. 설치기준 등(안 제5조)**

-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, 열람석은 6석이상 구비, 1,000권 이상의 장서구비 등
-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,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

**라. 예산의 지원 등(안 제7조)**

-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,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지원

**마.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(안 제8조)**

- 사서자격증 소지자,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소지자
- 도서관학교,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
-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

**3. 제정조례안**

- 붙임과 같음

**4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 제2조,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2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예산조치 : 추후반영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1년 6월 20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syyh2000@korea.kr

## 예천군 작은도서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및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,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작은도서관"이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
2. "자료"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3. "운영자"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,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·제공·열람·대출
2.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
3.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4.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

**제4조(군수의 책무)**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,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설치기준 등)** ① 작은도서관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일 것. 다만, 현관, 휴게실, 복도,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2.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할 것
3. 1,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할 것
4.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고루 구비할 것

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6조(등록 및 취소)**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,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, 평가결과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「도서관법」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7조(예산의 지원 등)**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
2.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**제8조(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)** ① 운영자는 자료및정보의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제공·열람·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,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한다.

1. 사서자격증 소지자
2.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소지자(독서지도사, 독서치료사, 학습

지도사, 유아교육,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)

3. 도서관 학교,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 
수료자

4.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

**제9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등)**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 
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,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 
있다.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 
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 
구성하며,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
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 
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 
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작은도서관 운영자

2.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 
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팀장으로 하며,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
2.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3. 문화행사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2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【도서관법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서관”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·조사·연구·학습·교양·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도서관자료”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3. “도서관서비스”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·열람·참고서비스,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,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,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·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.
- 3의2. “지역대표도서관”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·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.
4. “공공도서관”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·독서활동·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“공립 공공도서관”이라 한다) 또는 법인(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단체 및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“사립 공공도서관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.
  - 가.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

## 【작은도서관 진흥법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

## 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